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가단2613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용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연

변론 종결 2021. 4. 2.

판결 선고 2021. 4. 23.

주 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9. 6. 10.자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9. 6. 14. 접수 제92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3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체결한 광고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C, 피보험자 D, 보험가입금액 4억 원, 보험기간 2018. 6. 1. ~ 2019. 8. 31.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이하 '이 사건 보험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그 약정에 기하여 같은 날 D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그런데 C이 2019. 6. 13.경 D에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보험약정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6. 28. D에 위 이행보증보험에 기하여 보험금 377,546,625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보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C은 2019. 6. 10.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9. 6. 14.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920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은 무자력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시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지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보험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어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직후인 2019. 6. 13.경 C의 D에 대한 광고료지급 불이행으로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같은 달 28일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나아가 무자력 상태였던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재산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9호증, 을 1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인데, E와 C의 소재지와 실질적 대표가 같고, 그 영업 목적도 유사하여 C도 E처럼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을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 시점이 C의 부도 직후거나 이 사건 보험사고 직전이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

별지

1. 강원도 횡성군
임야 3306㎡
(위 부동산 중 지분 13170분의 3306)

2. 강원도 횡성군
임야 1386㎡
(위 부동산 중 지분 13170분의 3306)